『국제 규범에서의 이주민 인권과 시민권』을 읽고

전 경 옥 (숙명여자대학교)

이 논문은 담론만큼 다양하고 풍성하지 못했던 인권 연구에 중요한 연구 분야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광범위한 연구 범위와 사례를 보여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여 인권 연구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이주정책에 드러나는 한국 사회나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권 개념과 가치관을 분명하게 읽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함에도 원칙론적인 연구를 보완해주는 사례 연구는 흔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이 논문은 인권 연구의 방향 및 방법, 이주정책 연구의 다양한 관점과 사례,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는 정책 및 전략 결정 과정을 연구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몇 가지 점에서 연구자와 동의하는 부분을 밝히고 향후 논문의 완성을 위해 기대하는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때로는 연구자의 논의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고 때로는 검토해봄직한 점을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둘 다 단지 토론자의 의견일 뿐이고 연구자의 관점에 대한 반론이나 도전은 아니다. 접근 방법에 동의하나 그 방법이 충분히 실행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말하는 것이고, 권고안에 들어 있는 인권 규범에 대한 연구자의 분석이나 비판은 불충분했지만 연구를 더 진행시킨다 해도 한계가 다시 나타날 것 같다. 이 주제는 그자체로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그래도 시도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주정책에 있어서 한국 역시 한국의 정책이나 법규 외 이주 관련 국제 규범, 유엔과 같은 국제레짐의 영향력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이 논문은 기존 연구들이 국내적 조건들에만 주로 초점을 맞춘 것을 보완하여 국제 인권 규범이 어떻게 한국 이주 정책에 기능하는 가를 보고자 국제인권 규범의 한국 이주정책에 대한 권고를 분석하겠다고 했다.

첫째, 이 논문 제목을 보면서 처음에 들었던 생각과 기대가 처음부터 어긋났다. 연구자가 첫 페이지에 이 논문이 권고 내용을 보겠다고만 했기 때문에 목적에 어긋난 것은 아니나 아쉬운 점이다. 이주는 이주 수용국의 정치, 사회, 문화적 조건에 따라 이주자의 입국부터 정착까지의 모든 조건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수용국이 자유주의나 사회민주주의 중 어떤 것을 이념적 토대로 삼느냐에 따라 이주정책의 목표, 내용, 제도화, 실천의 성격이 다를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이주정책은 국제인권 규범의 모든 것을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는 수용과 거부 혹은 수정을 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첫 페이지에 각주 1번에서 후속 연구로 남기고자 한 부분이 바로 이 논문의 주제일 것으로 기대했던 부분이었다. 그래서 혹시 이 논문이 제목과 다른 내용이 쓰여진 건 아닐까 의문이 생겼다. 5페이지의 마지막 문단에서 연구자가 말한 것처럼, 동일한 의견을 논문의 끝에도 언급하고 있다. 이행사항을 점검하지 않고 어떤 권고를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 국제 규범과 한국 국내 정책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마칠 수는 없다. 가능하다면 이 논문에서 마저 다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 호기심만 자극하고 중단한 느낌을 준다.

둘째, 국제인권 규범에 관한 연구의 가장 큰 쟁점이 전파 경로라고 했다. 즉 국내 NGO가 국내법이나 정책에 도전할 때 국제 규범을 이용하여 그것을 전파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는 많은 사례 연구가 가능하다. 기존 연구의 한계로 지적된 것처럼 이는 자칫 국내적 요인을 경시하거나 무시하고 국제규범을 절대적 선으로 취급할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데 동의한다. 여기서 각 권고에 대한 이 경로를 파악하여 역동적인 소통 과정을 분석하고 국제규범과 국내 조건 및 정책 산물의 상호 작용을 보는 것이 기대되는데, 연구자가 보기에 기존 연구에서 부족한 부분이라는 지적을 하였다. 이 논문이 이것을 채워주리라 기대했었다.

셋째, 기존연구 소개에서, 국제규범이 국내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점을 강조하기 보다 오히려 한국 내 사회운동에 의해 민주화 과정 속에서 발전된 국내 규범이 국내 이주정책을 결정한 중요한 변수라고 믿는 연구 사례를 소개했다. 이는 한국의 경험에서 나오는 성향을 배제한 객관적인 규범의 도입으로 국제 사회의 보편적 기준을 따르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 접근방법과 대조적이다. 만약에 경로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인권 규범의 내용과 성격을 규정하는 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보는 연구라면 분명 자기 중심적일 위험을 안고 있다.

기존 연구들이 어느 정도는 국제규범이 우선이냐 국내적 요인이 우선이냐에서 지지하는 입장을 표출하는 의도를 가진 것일텐데 이에 대한 연구자의 입장은? 기초적인 것을 묻는 결례를 범하는 것인지 몰라도 이 논문 전체에 연구자의 입장을 밝힐 의도는 있는 건인지 듣고 싶다. 즉 보편적 기준에 따른 권고의 무리함이나 국내적 요인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하는 정당성에 대해 지원하는 논리가 있다면 듣고 싶다.

넷째, 연구자는 국제규범의 권고와 국내 정책간의 역학관계를 보고자 했는데 이를 위해 한국이 비준한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한국에 보내진 권고안을 다루고 있다. 연구자가 말했듯이 한국 정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보다 더욱 큰 범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연구자가 후속 연구로 남긴다고 한 부분이 바로 이 논문에서 다뤘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아쉬움이 생긴 것이다. 즉 이 권고안이 어떤 식으로 수용되거나 거부되었는지 알아야 국제 규범이 갖는 의미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수용과 거부의 이유와 과정을 통해 국제규범이 갖는 인권과 시민권의 개념과 한국 정부가 해석한 인권과 시민권의 내용이 비교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개의 비준한 조약이 아니라 한 개 혹은 수에 집중한 연구가 더 바람직 했을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사례연구는 후속 연구로 남겨질 것이다.

이 토론의 내용이 연구자의 의도를 벗어나는 것일지 모른다. 제목과 내용의 불일치(의도와 기대의 불일치 일 수도 있다), 국제규범 연구의 맛보기 정도의 간략한 내용에 대한 아쉬움을 담았을 뿐이다.

이 논문은 후속 연구를 위한 많은 아이디어를 제안해 준 공이 크다.